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2003. 7. 2.

제 출 자 유철식 의원 등 9인

□ 제안이유

-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표준 정원제 시행 지침에 의거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
- 우리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의정활동에 기여코자함.

□ 주요골자

- 경제환경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중 “경제통상국”을 재정경제국“으로 하고, “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“를 “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“로 하며, “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“를 삭제함(안 제3조제2항제3호)

□ 관련근거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중 “경제통상국”을 “재정경제국”으로 하고, “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”를 “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”로 하며, “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①~②(생략) 1~2(생략) 3. 경제환경위원회 <u>경제통상국</u>, 직속기관 중 성남시 농업기술센터, 사업소 중 성남시 상하수도사업소, <u>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</u>, <u>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. 4~5(생략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①~②(현행과 같음) 1~2(현행과 같음) 3. 경제환경위원회 <u>재정경제국</u>, 직속기관 중 성남시 농업기술센터, 사업소 중 성남시 상하수도사업소, <u>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. 4~5(현행과 같음)